

이 책 자료실		
등록	등록번호	자료번호
B12-1	B-12-1 2	총무부

국제증자재판소(PCA)제소를 위한 한·일변호인

SAd.a.3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B/D 305호  
전화 : (02) 365-4016  
전송 : (02) 365-401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PCA 한·일 변호인단

국제증재재판소(PCA)재소를 위한 한·일변호인단 토론회 보고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PCA 한·일변호인단

## PCA(국제중재재판소) 자료집을 펴내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금까지 아시아연대활동,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 국제 여성·인권 NGO단체들과의 연대활동, 국내 홍보·교육활동 등 여러방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과 정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떨어던 일본정부로 하여금 군과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게 했으며, 1,2차 조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없다며 이미 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모든 배상问题是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모금을 통한 기금을 창설하여 견무금(혹은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본변호사들과 민간단체,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과연 국제법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중재재판소(PCA) 제소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4년 11월 28일, PCA한·일변호인단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자료집은 정대협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활동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일변호인단 토론회 발제자료 등을 중심으로 엮어서 펴낸 것이다.

여러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이 자료집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PCA에 제소한 할머니들 중 한 할머니의 말씀으로써 본 편집자의 발간사를 끝맺음하고자 한다.

"나는 6년동안 일본군인들의 성노예가 되어 몸을 짓밟혔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후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은 할 수없고, 국민들에게 모금을 하여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위로금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일본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배상할 수 없다고 하니 나는 국제재판에 이것을 제소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국제적으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들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1995. 1. 6

편집자

## 차례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토론회에 부쳐(윤정옥)	4
2. 일본변호인단 대표인사(스즈끼 히로시)	6
3. 한국변호인단 대표인사(유현석)	7
4. PCA의 운동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계획(지은희)	8
5. 일본에서의 지원활동에 관하여(이시카와 이즈코)	13
6.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와 PCA의 유효성에 대하여(아이타니 구니오)	17
7. 한일협정과 PCA(배금자)	24
8. UN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와 PCA의 유효성(도츠카 에츠로)	30
9.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소고 - 배상액, 배상방식과 관련하여(박원순)	37
10. 일본정부의 중재수탁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오자키 준리)	44
11. 논평 1. 김원웅 의원 논평 2. 신각수 외무부 동북아 1과장	49
12.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	51
13. 중재합의서	54
14. 신문자료	57
15. 부록(PCA 및 정대협 활동자료) 1) '위안부'와 강제노동조약 위반(도츠카 에츠로)	61
2) 왜 지금 PCA에 갈 수밖에 없는가?(지은희)	63
3) PCA제소를 위한 정대협의 활동과정과 과제(윤미향)	77
4) 불처벌에 대한 배상 판례 / 제인스 사건	82
5) 연립여당내 전후 50주년문제 프로젝트 위원회의 민간위로기금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지은희)	91
6) UN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윤미향)	94
	99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토론회에 부쳐

윤 정 옥(정대협 공동대표)

우리는 얼마 전부터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s of Arbitration)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해왔고, 오늘은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26일 아침 일본여당의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 산하 '종군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에서 '위안부'들을 위해서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이 일본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년 9월에 이런 합의가 있는 것을 예견이라도 한듯 PCA 한일 변호인단에 중재재판건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협력단체들은 그 후 'PCA 연락회'라는 지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금년 6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전 일본군 '위안부'들과 국제중재재판을 받자고 도쿄에 가 있는 동안 일본정부는 '위안부'를 위한 배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아시아평화 우호교류라는 것을 매스콤에 홍보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평화우호교류가 '위안부' 개인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배상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즉각 항의했습니다. 관방장관이 민간모금으로의 '위로금'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일본의 PCA연락회와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혜행위가 무슨 소리냐?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에게 '선심'을 쓰게 하고 免責을 받으려느냐? 이것은 '위안부'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다시 모욕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11월 22일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어떻게 국제법에 저촉되는지,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에게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11월 22일 ICJ보고서를 받았는데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이 26일 아침 보도된 것입니다. 한

국과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소리, 특히 할머니들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항의했던 소리, 비를 맞으며 거리를 행진했던 시위도 아무 소용이 없는듯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정부의 체질로 보아서는 많이 변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 6월 '종군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리고 다녔다고 한 말에서 1993년 8월에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위로금' 이야기가 나오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일본이 앞으로도 '위로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ICJ 보고서와 민간모금 위로금 발표를 앞에 놓고 볼때, 9월에 한일변호인단에 중재재판 사무를 위임했을 때보다 PCA가 더욱 강한 가능성있는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강요당했던 여성의 문제뿐 아니라 전여성의 문제요 남성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요 인류가 계속하는한 인권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PCA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로 상징되는 인권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유의지로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정대협과 일본의 협력단체는 세상에 있는 평화와 인권과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단체와 힘을 합해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 일본 변호인단 대표인사

스즈끼 히로시 변호사

일본에서 온 변호사 스즈끼 히로시입니다. 일본변호인단에는 68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 중 8명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본변호인단의 결성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정대협과 할머니들이 일본 동경 지방 검찰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동경에 온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여기 온 변호사들이 도츠카변호사의 제안으로 할머니들과 함께 동경지방검찰청에 갔습니다. 그 때 일본검찰청은 형사처벌의 문제는 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어렵다면서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이 검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바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이 문제는 일본재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결론을 짓고, PCA로 갖고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대협이 국제중재재판소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가기로 했다는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6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PCA에 가서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68명의 변호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PCA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과 11명의 할머니들의 위임을 받아서 11월 22일에는 중재합의서를 일본 외정 심의실에 제출하고, 이 중재합의에 일본정부가 응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PCA가 아주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찬성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라야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중재합의서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 한국의 여론이 PCA에 일본정부가 응하라는 것을 확실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PCA를 찬성하는 개인들과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일본정부가 PCA를 정책으로 받아들이도록 로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변호인단 대표인사

유현석 변호사

오늘 일본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정의를 지향하는 민간인 여러분이 이 곳 서울까지 오셔서 한국의 변호사 및 관심있는 분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과 정부가 아시아 각국 여성에게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정부가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에 열렸던 전범재판 또는 전후처리는 당시 연합국들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강제연행, 징용, 징병, 강간, 고문, 학살 등 잔악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피해자였던 한국인과 아시아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수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명예와 인권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과는 반대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채 민간 모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몇 건의 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는줄 압니다만,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보다 시일을 절약하고 확실성을 재고한다는 의미에서 좋겠다는 새로운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ICJ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회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가 가능하도록 애쓴 정대협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PCA의 운동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 계획

지 은 희(정대협 PCA특별위원장)

1994년 11월 16일은 정대협이 결성된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3일에 행하여진 일본대사관 앞의 144번째 시위는 일본대사관의 요구에 따라 동원된 전투경찰의 봉쇄로 전투경찰을 사이에 두채 양쪽에서 마이크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양정부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모습이었습니다.

진상규명, 범죄사실 인정, 국회결의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명기, 위령비 건립, 책임자처벌, 이렇게 7대 요구를 내걸고 할머니들과 한명어리가 되어 싸워온 지난 4년의 운동의 성과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성과는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개인적 명예를 짚어지고 숨어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당당하게 역사의 증언자로서 나서게 된 일입니다.

둘째는 은폐되었던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범죄가 UN 등 국제사회에 폭로되어 일본정부가 국가에 의한 성노예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1월 22일 발표된 ICJ의 보고서는 이 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법률가협회의 보고서에는 일본정부는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을 함께 풀려고 하는 세계여성의 연대가, 특히 아시아 각국 여성의 연대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의 여성운동과 한국의 여성운동이 그리고 양국의 양심적인 운동세력이 자국의 민주화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여성인권보장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경

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정부 스스로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 2차 조사보고서에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는데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행동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경제대국이라는 국제적 위치를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신적·경제적 배상을 하지 않은채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활용하여 약간의 시혜적 위로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천박한 책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대협은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에게 PCA의 중재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대협이 25번의 회의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한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운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PCA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PCA에 가져가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 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선례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가 다시는 역사속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할머니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본정부의 물질적 희유에 굽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맞서 스스로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이긴 당당한 모습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6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병들어 계십니다만 ‘내가 싸우다 이기지 못하면 내 딸세대, 내 손녀세대라도 나서서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할머니들의 말씀대로 PCA재판을 통해 일본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당당히 사죄받고 배상받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넷째, 만약 국제중재재판을 일본이 받아 들인다면 일본이 적어도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간의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가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택한 정대협의 PCA 중재재판 요구마저 만약 일본정부가 거부한다면 일본정부는 세계사 속에서 거듭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적 과오가 세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진정한 참회와 법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세계속에 그리고 아시아내에서 ‘부유한 후진국’으로 영원히 남게될 것입니다.

정대협은 이런 의미를 가진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PCA운동의 기반확대를 위한 작업입니다.

1)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PCA변호인단으로 참여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현재 37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전후보상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에는 PCA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2)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선전작업입니다.

민주당내에 정신대대책의원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3) 한국정부의 PCA운동에 대한 지원확인입니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처벌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할 것이고, PCA재판에 대해서도 협조의사를 밝혔습니다.(아일 22220-422)

- 4) 1992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수요시위의 대중적 확산방식 모색입니다.
- 5)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와 PCA지지와 위한 지방순회강연 및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 선전작업의 강화입니다.

- 1)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
- 2) 중국 무한에 벼려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초청 증언집회 추진 (1995년 3월 예정으로 추진중)
- 3) 현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린다 챠베즈씨의 조사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씨의 조사, 심각한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 씨와 귀쎄씨의 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방문초청 및 토론회 계획
- 4)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95년 8월 30-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 여성대회와 NGO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재판’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외에 아시아국가, 또는 보스니아 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포럼’ 등을 며칠에 걸쳐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중입니다.

셋째, 아시아피해국간의 연대강화입니다.

아시아 모든 피해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연대회의를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인 린다 샤베즈씨의 방한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는 방안 논의중입니다.

## 일본에서의 지원 활동에 관하여

넷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맞는 진상규명작업의 촉진입니다.

-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백서 출간
- 2) 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 발간(인쇄 대기중)
- 3) 중국 무한의 버려진 할머니들의 증언록(출판사에 넘겨진 상태)
- 4) 할머니들의 현실과 운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중

정대협은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원칙에 맞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반성 없는 태도와 망언들때문에 때로는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역사의 정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까와 이즈코  
( 일본 PCA 연락회,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

### 1. 연락회 성립과 그 이후

'국제증재재판의 성공과 개인배상의 실현을 위한 연락회'는 올해 9월 15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NCCJ, YWCA, 일본그리스도교 교통회, '종군위안부' 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 '여성과 인권' Kunitachi 시민회 그룹, 성차별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등 40여개 단체와 300명 가까운 개인이 참가하였고, 지금도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에서 제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일본인들이 인식하여 일본정부에게 진상구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와 정대협 여러분이 동경지검에 고소, 발장을 제출하려고 오셨을 때, 우리들은 특히 우리의 책임을 간절히 느끼고, PCA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여성국회의원들과 지식인들이 일본정부가 민간모금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행동네트워크(현재의 PCA연락회는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조직되었음) 성원들은 그 분들을 몇번 만나고 또 공개서한도 보내는 등 철회를 구한 바 있습니다.

7월 하순에는 무라야마 내각의 '청소년교류센타' 안에 반대하여 그 철회와 진실한 사죄, 배상을 구하는 긴급 서명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때 10일도 안되어 1만명의 서명을 받고 수상에게 이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명활동을 끝낸 후에도 또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9월의 연락회 발족후, PCA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락회는

10월 25일 제2회 집회를 갖고 정대협의 윤미향 간사와 스즈키 변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또 오는 12월 17일에는 ICJ 권고를 환영하는 제 3회 집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중재재판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 리플렛, 그림엽서 등을 발행했습니다. 또 가명단체는 자기 단체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2. 진실한 해결을 향하여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뿐만 아니라 전쟁후에도 그대로 방치해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군의 관여를 인정한 후에도 일본정부는 마땅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할 것이 없고, 민간모금이라는 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3의 죄가 아닙니까?

일본정부 외무성에 의하면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상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에도 보상해야 하는데 너무도 보상에 필요한 금액이 방대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방대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작은 악한 일보다 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교훈을 후세에까지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반대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시아의 형제자매들과 우호 관계를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도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에서만 통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월 2일, ICJ에서 보낸 권고문을 일본 외무성은 무시하고 여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 성원들에게도 배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세계 평화에 대해 의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일본정부는 ICJ 최종보고서의 권고를 하루빨리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요망

서를 11월 22일자로 보냈습니다.

나가노, 사쿠라이, 하시모토 통산성 등의 잇따른 대신들의 망언, 학교에 다니는 길에 치마저고리를 찢겨버린 소녀들, 이러한 일들은 다 일본이 국가로서의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추악한 연관들을 끊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개인배상을 언제까지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들은 정부가 중재재판에 합의하여 국제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재판실현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금년 4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쓴 시집 '부신 꽃들을 위한 Requiem' 중의 시들 중 하나를 읽겠습니다. 이 시는 자신의 모국어를 말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소녀에 대한 requiem입니다.

## 소녀 9

절려진

당신의 목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도끼꼬'라 제멋대로 불리워진  
소녀

두만강 강변의 '위안소'에  
강제로 가둬져 있던  
소녀

조선말을 썼다고  
본보기로  
일본도로 목을 잘리운  
소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천황의 군대에는 일삼아 일어났고  
'위안소'에 가는 것은 공용이라고 정해져 있었다던가.

닭처럼 목이 잘린  
소녀의 억울함은  
잘려버린 목만이 어느새  
머나먼 하늘높이 떠 있었던 것입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희미하게 당신의 목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군요  
왜요? 라고  
울부짖고 있군요  
순진한 어린 얼굴로

##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와 PCA의 유효성에 대하여

아이타니 구니오

### \* 이하는 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준비 발제문입니다.

#### I. 일본군 '위안부' 재판의 현황

##### 1. 제기된 재판

- 1) 한국태평양희생자유족회 - 1991년 12월
- 2) 한국부산소송 - 1992년 12월
- 3) 필리핀 소송 - 1993년 4월
- 4) 재일송신도 소송 - 1993년 4월
- 5) 네덜란드인 소송 - 1994년 1월

##### 2. 소송의 진행관계

1)과 3)은 본인신문을 속행, 2)와 4)와 5)는 주장의 단계이고, 심문은 아직 열리지 않음. 4)와 5)은 주장의 정리와 논쟁은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예정,  
2)는 진행미정

##### 3. 주장의 요점

대강 나라의 주장은 동일되어 오고 있다.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 1) 민법의 주장에 대해서는 - 國家無答責
- 2) 국제법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 주장의 조약에 손해배상규정이 없는 경우 : 조약위반이 불법행위로 되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 주장의 조약에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 국제법에 소송절차가 없다.  
-> 실체적 권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 . 재판소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 1) 민법에 관해서는 除斥기간
  - 2) 國家無答責은 대심원이 확립한 판례
  - 3) 국제법은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앞으로의 전망
    - 1) 증거조사에 들어갈지 어떤지가 어려운 상황
    - 2) 가령 증거조사가 있어도 결심까지는 최저 3-5년이 걸린다.
    - 3) 원호법에 [石.陳재판]은 재판소에 전혀 기대불가를 증명
    - 4) 재판소가 국제법상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 5) 재판소는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욕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소에서의 승소는 전혀 전망할 수 없다. 또 그 실마리 자체도 없다.

## II. 일본정부의 움직임

1. 민간모금 구상의 행방
2. 정부 官房의 의도
3. 당사자. 운동단체의 반발
4. 전망 ---- ?

## III. 입법화운동에 대하여

1. 변호사에 의한 [배상기금 법안]의 시안이 작성되었다.
  - 1) 1994년 9월 스스로 변호사에 의함.
  - 2) 정부의 전액출자, 민간모금도 받아들인다. 원칙은 가. 개인에 대한 지불, 나. 피해에 대한 배상임 다. 사죄의 의사로 수반하는 것임  
<---- 네덜란드, 영국의 포로. 민간억류자의 의향을 대변한 것.
2. 방향
  - 1) 운동단체(재일지원회, 필리핀 지원회, 자치노)가 찬동과 기대를 하고 있음.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회의 태도가 애매하다.

- 2) 국회의원, 사회당, 내각외정심의실 등은 흥미를 갖고 있다.
  - . 이유 - 운동체는 재판에서의 호소도가 전보다 약해져서 운동의 핵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다.
  - . 국회의원이나 사회당, 내각외정심의실의 이유는 일부를 차용하고, 민간 모금구상에 이용할 수 없을까 하고 기대.
3. 앞으로의 대처
  - 1) 현단계에서 이것을 공표하여 입법화운동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 2) 민간모금 구상이 안되게 되는 단계라면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법안제시의 의미는 있다.
  - 3)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면 PCA밖에 없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법적 책임을 명지한 입법을 하라, 그것이 안되면 PCA에 판단을 구하라.

## IV. PCA의 유효성

1. 국내적 해결이 불가한 상태
  - 1) 재판도, 정부의 자기승인도 둘다 불가능
  - 2) 제시되는 해결책은 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
  - 3)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제안이 아니면 전진할 수 없다.
2. 국제법상의 쟁점을 개인이 처음으로 다룰수 있는 자리가 된다.
  - 1) 국제법상의 당사자성의 확립
  - 2) 국제법상의 소송절차 확립 - 개인의 실체법적 청구권의 성립
3. PCA의 판단의 활용
  - 1) 정부도 국제적 판단에 따름으로서 국제이해를 얻을 수 있다.
  - 2) 법적 책임이 판정되면 그것을 전제로 한 해결책이 가능하다.
    - 예산조치 및 자민당 등의 설득도 가능해진다.
  - 3) 챔피언 소송으로서 다른 해결의 전망을 가능할 수 있다.
    - 그 위에서의 법안화가 가능. 문제점은 피해자의 인정방법. 기간

## V. PCA의 전망

1. 법적 근거로서는 ICJ의 보고를 활용하여 승소 가능
2. 개인의 피해인정의 문제
3. 처벌의무를 중심으로 한 立論 - 일본정부가 가장 반박 어려운 점
4. 최대문제는 일본정부의 동의
  - 1) 개인이 국가와 동일한 위치에 서는 것에 대한 혐오감
  - 2) 위로부터의 반발: 처벌의무에 관해서
  - 3) 일본의 재판소의 반발: 최고재판소가 가장 상위의 것이다.
5. 기타

\* 이하의 내용은 10월 28일 토론회시 보고내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위반은 다섯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인도에 반한 죄이며, 또 하나는 국제법상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세번째가 추업조약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네번째가 강제노동금지조약의 위반입니다. 다섯번째는 필리핀과 네덜란드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헤이그 조약의 위반입니다. 이런 조약의 위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당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위반을 일본의 재판소에서 주장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정부는 두가지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국제조약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약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수속이 국제법에 없기 때문에 개인배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수속절차가 없으면 실제적인 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시 해야 할 것은 ICJ보고서에서도 있었듯이 이러한 국제법위반은 국내의 소송절차에서 밟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개 진행중인 재판을 봤을때 일본재판소는 국제법상의 이론을 일본국내법상의 재판상의 절차에 끌어들여서 절차를 하기에는 거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위반을 일본의 재판에 끌어들여서 문제를 삼고 해결을 촉구하기에는 일본내에서는 아주 어려운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위안부 재판은 아니지만 그 이외의 재판에서 최근 처음으로 국제자유권규약을 직접 적용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앞으로 재판의 전망이지만 먼저 구체적인 증거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재판소는 국제법상의 주장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송신도씨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재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기간을 짧게 잡아도 1심만으로 3-5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7월 15일에 석씨와 진씨 두 사람의 전쟁원호법의 전쟁상해연금청구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사람이 아니다. 연금은 일본인만이 대상이 된다." 즉,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원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재판부는 전쟁의 책임은 국민이 평등하게 져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호법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전쟁에 의한 피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판단을 보이고 있는한 일본의 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움직임을 제외하고, 이러한 재판의 상황속에서 국제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소는 PCA밖에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답변에도 있듯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법상의 수속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본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PCA가 국가와 개인간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본측의 답변을 번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절차를 국제법상 인정하게 만듬으로서 배상에 대한 실체적인 그러한 배상의무를 일본정부가 인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상설국제중재재판소를 단 한번 이용한 적이 있

었습니다. 1905년에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에서 생겼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본정부가 외국인에게 빌려준 땅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고정자산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소위 불평등조약을 해소한 직후이며 국제사회에서 싸운다는 의미에서 이 상설중재재판에 응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일본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이 PCA로 열강 선진국들의 이론에 견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선 이 재판에서 견다는 것이 아직은 후진국이라는 캠페인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도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서로 주장할 수 있다면 이런 국제적인 장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 내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CA 재판에 일본정부가 합의할 것인가 어쩔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님께 얘기를 들어보고, 우선 이것이 가능해졌을 경우의 활용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도 알 수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PCA의 장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공평한 자리에서 법적 책임이 판단된다면 일본정부가 그것에 따른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도 보기좋고 선택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이 PCA에 가지 않더라도 일본정부는 PCA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해결책을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대협과 11명의 할머니가 요청하고 있는 이 사건은 소위 챔피언 소송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일본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법을 입법하는 것이 방법상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PCA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내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 근거로는 ICJ 보고서의 이론을 최대한 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할머니들의 개개인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일본정부가 PCA에 응하느냐 어찌나,라는 점에서는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인과 국가가 같은 씨름판에서 재판을 하는 것과, 국가의 상위부분에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자유권규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본의 최고재판소위에 그보다 더 상위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체내에서 해결하려는 최고재판소까지를 최고로 일단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PCA중재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변호사들 67명이 아주 단기간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들 간에서는 국제적 형태의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꼭 해보고 싶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서 일한변호인단이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재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소의 장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한일협정과 PCA

배 금 자 변호사

### 1. 일본정부의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개인배상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정부는 사실적인 면과 법률적인 두가지 면에서 모두 책임회피를 도모하고 있다.

사실적인 면에서는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관헌의 주도적 관여를 부인하고 있고, 법률적인 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3.3.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명한바 있고, 이에 뒤이어 일본의 관방장관이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법적으로는 한일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보상문제를 포함하여 1965년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의 이 말뜻에 대해 얼마후 "피해자 개인의 보상요구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미 즉흥적으로 표명한 이러한 견해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일본정부에게는 좋은 구실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정부는 거듭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은 없으며 65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PCA로 가는 경우에도 이러한 태도는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65년 한일협정으로 과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65년 한일 협정의 내용

1951년 제 1차 회담을 시작으로 제 7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장장 14년이 걸려서 1965. 6. 22 체결된 한일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하 65년 협정이라고 한다.)

이 협정에서 일본이 종결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조항이 바로 제 2조 제 1항이다. 그 내용을 보면,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불 10년간 지불, 차관 2억불 7년거치 20년 상환조건 10년간 제공, 민간신용 3억불 제공을 하였다.

이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재산 및 청구권 속에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도 포함된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 협정으로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 3. 65년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

#### 가. 8개 항목청구권과 65년 협정의 과정

65년 협정은 한국정부가 제 1차 회담에서부터 일본에 제시한 8개항목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그 협상과정을 보면 청구권에 관한 토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8개 항목 청구권도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범죄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개 항목청구권은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의 반환 (2)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對朝鮮總督府債務의 辨濟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振替 또는 送金된 금품의 반환, 청구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었던 법인의 在日재산의 반환 (5) 한국 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6) 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7) 前記 諸財產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諸果實의 반환청구 (8) 前記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항목이다.

이상의 8개 항목청구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본국이 한국인에 가한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청구내용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되어 두개의 국가로 분리되므로써 일본정부가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재산의 변환이나 한국국민에 대하여 미변제한 채무의 변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8개 항목청구권에 대해서도 1차에서 4차 회담까지는 전혀 토의 조차 이루어진바 없고, 5차 회담에서 비로소 토의가 시작되었으나 일본정부가 확실한 증거관계가 법률관계에 기한 것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8개항목 청구권은 증거관계및 법률관계가 불확실하여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세세한 청구권에 기한 주장을 포기하게 되었다. 즉 6차 회담때부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종전의 청구권주장을 포기하고, '전체액수'와 '명목'에 대한 타협으로 협상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한 끝에 일본정부와 간에 일괄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룩한 것이다. 이것이 65년 협정인 것이다.

1994. 11. 22. 국제법률가협회(ICJ)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 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않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65년 협정은 청구권협정을 假裝한 경제협력자금지원협정이며, 일본국이 전쟁 및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한국민에게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금을 책정하여 종결하기로 한 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민형사책임은 양국 정부간에 전혀 언급도, 마음에도 없었고, 종결하기로 한 협정의 내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 나. 외교보호권의 포기

일본정부는 65년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개인배상청구가 법률상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국정부가 한국민인 피해자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배상청구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며 이것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본정부가 종래 자국민에게 취해온 기본인식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私人的 재산, 권리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사나 행위에 의해 저해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 또는 청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에 의한 권리구제가 국내법상 모든 수속을 다하여도 부당히 거부된 때에 개입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에 기한 경우뿐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권리가 타국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본국이 개입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외교보호권만이고 자국민의 권리나 청구권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가령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종결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권리, 청구권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 8. 27. 일본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65년 협정으로 한일양국에 의해 존재하고 있던 각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한일양국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고, 개인청구권은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킬수 없습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그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달라졌지만 자국민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국민의 在韓 재산및 청구권의 포기를 한 것과 일소 공동선언으로 일본국민의 소련에 대한 재산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국민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물었을 때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조약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나라가 갖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뿐 국민의 재산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65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에 불과하여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며 피해자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하등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65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인 것이다.

#### 다. 배상을 받은바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65년 협정의 댓가로 받은 자금으로 생긴 원화자금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군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로 소집되거나 징용된 자 중에서 1945.8.15이전 사망자에 한하여 사망자 1인당 30만원(19만엔)을 보상하여 총액 92억원(58억엔)을 보상하였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의 5.4%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물론이고 강제연행자, 피폭자, 사할린잔류자, 재일조선인, 징병징용생존자, BC급전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 자금에서 한푼도 받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최근들어 한국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일이 있을뿐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 또는 배상금 등 어떤형태의 물질적 지원을 전혀 받은바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들어서 처음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국가와 군의 부분적 책임 및 강제성을 시인한 것은 1993.8.4. 제 2차 진상조사 발표때이다. 그 후로는 현재까지 진상조사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법적 책임인정도 피해배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에 대한 재산적, 인격적, 신체적 피해회복은 전혀 된바 없고, 현재까지 그 피해는 계속 방치되어 있으며 심화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65년 협정당시 한국과 일본정부가 향후 역사상 발굴되어 새롭게 문제제기가 될지도 모를 모든 청구권의 문제까지 미리 포함하여 종결하기로 했다고 할 수 없다.

#### 라. 불처벌에 따른 배상문제

일본은 전후 극동군사재판에서 몇몇 전쟁지도자들이 전쟁범죄인으로 재판받았지만 조선인에 대한 죄는 전혀 재판받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이 BC급 전범으로 몰려 피고인으로 재판받았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로 재판받은 것은 바타비아 네덜란드 군사법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9명이 사형을 당한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범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며,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자 처벌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전쟁범죄는 국제법상 시효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현재까지도 단 한명의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도 스스로 처벌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3.2.8 일본검찰청에 제출한 책임자처벌요구 고소.고발장의 접수마저 거부하여 책임자처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범죄자 처벌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온 것 자체로 부터도 일본정부의 배상의무는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ICJ의 보고서에도 가해자를 불처벌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 4. PCA에 의한 해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65년 협정으로 외교보호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일본국내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보았지만 재판에 의한 해결은 지금까지의 재판경과와 사법부의 위치에 비추어 볼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들로서는 더이상 기다리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보았지만 일본정부는 처벌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했고, 일본정부에게 스스로의 책임이행을 촉구해 보았으나 일본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만 대면서 법적 책임은 부인하고, 오히려 동정이나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직접 국제법상 주체로서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이 가능한 PCA에 의한 중재판정을 받는 길이다.

일본정부가 국제법질서를 존중한다면 그동안 아무런 힘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주장해 온 65년 협정에 의한 종결론만 외치지 말고 65년 협정에 대한 해석도 받아보고, 전쟁범죄인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존존하는지에 대해 권위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판단을 받는 길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일본정부는 이제 더이상 65년 협정을 傷家의 寶刀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 뒤에 도피하는 비겁한 짓을 그만두고 국제법질서를 존중하는 상임이사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위신에 걸맞게 국제적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 UN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와 PCA의 유효성

도츠카 에츠로

## I. ICJ의 최종보고서의 충격

1) ICJ보고서(초고) 공표전인 11월 중순, 일본여당 3당의 ‘위안부’ 문제 소위원회에 NGO를 통해서 전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11월 18일경) 무라야마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11월 25일, 동 소위원회는 무라야마안을 수락하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2)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외무성 관료가 정치가들에게 “ICJ는 적당한 단체이다. 일본정부를 만나지도 않고 최종보고서를 냈다”라고 하거나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11월 22일 저녁, 신문기자에게 ‘ICJ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는 안받았다’고 하는 등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외무성 관료는 ICJ최종보고서(초고)를 9월 2일에 직접 받으면서, 이것을 일본정부 수뇌나 여당 3당의 정치가들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즉 정보조작을 하여 일본정부 수뇌를 자유롭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정치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은 교묘한 관료들에 의해 쉽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 II. ICJ의 평가

1. ICJ는 9월 2일 최종보고서(초고)를 일본정부 제네바 대표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코멘트를 하면 그것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공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ICJ조사단 멤버가 1993년에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도 아시아국의 다카노씨 외 1명과 면담하여 일본정부의 입장을 질문했다고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ICJ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가들의 UN자문기관(NGO)입니다. ‘그 최종보고서는 국제적인 제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최종보고서의 공표는 전세계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 III. 현재의 정세분석

1. 한국의 인구의 반인 2300만명의 여성을 대리하는 한일 PCA변호인단(100명을 넘음)이 발족한 것은 큰 전진입니다. 피해자는 조선반도 전체에서 나왔습니다. 한가지 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일체입니다. 남북한, 한국전체의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의의는 큽니다. 이 문제에서는 남북의 NGO가 항상 상호 일치하여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2. 금년의 UN인권소위원회에서는 UN의 NGO 약 15개가 일치하여 피해자를 지지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지지한 의의는 매우 큽니다. 운동방향이 세계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J도 국제중재의 방향을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금까지 국제법하에서의 일본의 국가책임의 전문적 연구,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IFOR의 권고는 있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ICJ의 최종보고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IFOR의 법적 주장을 대략 지지하였으므로 앞으로의 UN에서의 법적 논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4. 이 문제에 대해서 UN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카나다의 일본군에 의한 포로피해를 UN에서 ‘1503수속’을 사용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UN인권소위원회는 제 2차 대전 중의 문제에 관한 UN의 권한에 관한 의문에 의하여 ‘동 대전중의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1503수속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하여 결정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1992년 2월의 UN인권위원회에 호소했을 때에도 'UN에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일본의 반론이 장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문제를 1503수속이 아니라 노예문제로서 제기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전이 가능했던 것은 정대협의 호소가 세계의 단체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증언 및 일본역사가, 특히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타'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발굴작업에 의해 진상규명을 진전시킨 것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WCC, IED, IFOR, Liveration 외의 UN NGO의 활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 UN현대노예제부회의 중재권고, 금년 8월 UN 인권소위원회의 '전시노예제 연구'에 관한 결정, '불처벌문제연구'에 관한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 IV. 앞으로의 운동방향

##### 1. 중재합의서 성립을 향한 운동

ICJ최종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권고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일본이 이것을 하지 않고 법적 논쟁도 계속된다면, 이 문제는 일한간에서 백년이 지나도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양민족간의 증오가 계속되고 세계평화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일본의 재판은 길고 또 판결이 나와도 일본인 재판관의 판결은 한국민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제 3자인 국제재판소에 의한 신속하고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결정만이 이 분쟁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자가 설명한 경우, 이 견해에 반론한 일본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PCA의 유효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PCA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ICJ의 권고문을 구체적으로 읽고, 정부 관료들이나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정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 보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좋습니다.

아주 최근에 일본외무성과 사회당 사이에 이것을 둘러싼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러한 논쟁을 20년이나 앞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한시간 얘기를 해서 이 전체가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면 제 3자에게 갖고 가자. 피해자들은 여기에 찬성한다. 피해자들은 제 3자가 내리는 결정에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할 말하고, 당신도 당신할 말 하면 된다. 그래서 공평한 결론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일본정부는 말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법적인 논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ICJ 권고문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 논문도 좀 읽으셨으면 합니다.

##### 2. 일한 정치가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

적어도 일본의 관료에 의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관료는 '천황의 관리'였던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지금도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가 일본을 통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료는 지금까지의 방법과 생각을 바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한문이라도 새로운 예산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헌법하의 정치에서는 선거된 정치가가 일본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관료는 민주정부에 고용된 손과 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가는 전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예산의 결정도 정치가의 역할입니다. [개혁]은 정치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와 모든 정당에 대한 전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ICJ보고서의 법적 문제 등을 가지고 정치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료에 의한 정보조작을 그대로 해서 정치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3. 법적 논의의 필요성

일본에 관련되는 인권문제로서는 '위안부' 문제는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일본의 국가책임논의는 거의 행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이 2년 반동안 거의 매주 이것에 관한 논문을 공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무관료 이외에는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한협정에 관해서도 실제로 전문을 읽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

무관료의 정치적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일한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일본사람들이 믿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전, 일본인은 '군사 제 1주의'였습니다. 전후는 '만사가 돈'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예, 생명, 자유, 신뢰, 우호라고 하는 재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산문제에 관해서 결착하면 '그 외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물론 국제법위반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대협과 피해자에 의한 고소, 고발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CJ의 최종보고서는 그것을 주시하여 '인권침해의 문제는 일한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일본정부와 시민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ICJ 최종보고서, 특히 '법적 문제(제9장)'에 관해서 빨리 번역을 하여 출판하고 정치가, 법률가,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상세하게 확립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를 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ICJ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노동조약위반'에 관해서는 금년 ILO가 이것을 적용하여 선례가 생겼으므로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LO에 대한 통보의 권리를 가진 것을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밖에 없으므로, 일한의 노조에 대한 지원요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논쟁이 활발해지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경우 우리들은 '그렇다면 국제중재로 조기해결을 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효한 반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중재요구는 일본정부의 반론을 봉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4. UN에서의 최근의 전진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현대노예제부회, 인권소위원회의 연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힘듭니다. 또 UN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강하게 넣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의 권한이 있으므로 일본정부에 대해 가장 강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UN에 대한 협력의 방법으로서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관계자를 일본 등에 초청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엔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PCA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엔의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바로 8월에 2가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문서를 쓴 사람들을 초청해서 중재요청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NGO는 국제적 NGO도 국내 NGO도 일치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은 이제 최종단계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 5.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 - UN을 중심으로

(1994년 후반)

- |        |  |
|--------|--|
| 8월     | UN인권소위원회(제네바)<br>현대노예제부회 보고서의 보고<br>(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권고)               |
| 9일     | 한국변호사협회 회장 성명(국제중재에 의한 해결지지)   |
| 12일    | NGO브리핑   |
| 19일    | UN인권소위원회 '전시 노예제'에 관한 결정(챠베즈 위원)<br>동일 등 현대노예제에 관하여 '불처벌문제에 관한 연구'의 결의 |
| 31일    | 무라야마 구상 '평화우호교류계획'<br>'민간모금에 의한 견무금(위로금)지불'                            |
| 9월 2일  | ICJ프레스 레리스(정부에게 최종보고서(초고)송부,<br>권고의 골자공표)                              |
| 15일    | 일본측 국제중재재판을 실현하는 연락협의회,<br>동 변호인단 발족(도쿄)                               |
| 23일    | ILO전문위원회세미나(도쿄)  |
| 10월    | 한국변호사협회 잡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문 게재   |
| 12일    | 연립3여당 '종군위안부 등 소위원회' 설치 결정(도쿄)   |
| 20-    | 동아시아 여성 포럼(도쿄)   |
| 11월 8일 | 연립3여당 '종군위안부 등 소위원회' 식자의 공청회<br>(우에스기씨 외)                              |

- 19일 연립3여당 '종군위안부 등 소위원회' 무라야마 안 보류결정  
(JT보도)
- 21일 '무라야마 수상은 연초에 이세신궁에서 민간모금 호소 예정'  
(요미우리 보도)
- 22일 ICJ최종보고서 공표, 세계적인 보도  
일본측 국제중재재판 변호단 수상관저 교섭, 기자회견
- 24일 한국변호사협회 회장, 이사의 방일 - 일변련과의 교류
- 28일 PCA한일 변호인단 토론회
- 12월 10일 일변련 국제심포지움(세계여성회의 준비)
- 12월 일변련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
- 12월 살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 용크맨씨 초대(연기)
- 1995년
- 2월 UN인권위원회  
ICJ보고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별보고자 예비보고서 제출,  
IFOR, 기타 NGO의 활동
- 3월 UN여성의 지위위원회(뉴욕)
- 4-5월 UN현대노예제부회(제네바)
- 8월 UN인권소위원회
- 9월 UN 세계여성회의(베이징)

##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소고(小考)

- 배상액, 배상방식과 관련하여 -

박 원 순 변호사

### 1. 서론

-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

종래 일본군 '위안부'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축적되어 왔다. 아직도 이들 희생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에 대한 완강한 거부로 그 이상의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예컨대,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배상액은 얼마가 되는가. 또는 배상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사망한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유족도 없이 사망한 희생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아직 일본정부는 '떡'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자들이나 활동가들 사이에 배상액 및 배상의 지급방식 등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 전혀 이에 대한 논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급들과 여러가지 합리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상액이나 배상의 방식을 논의하여 보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일본정부는 배상액이 아니라 위로금의 형식으로라도 지급할 용의를 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도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전후배상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제중재재판

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논의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에 일본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는 그 재판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상액수와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구체적 문제의 논의는 중재재판소에 의한 심리와 결정에 커다란 참고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2. 종래 제시된 배상액수

첫째, '카렌 파커'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제시한 액수이다. 이 변호사는 희생자 1인당 1백만불의 배상금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어느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캠페인 단체가 제시한 액수이다.<sup>1)</sup> 이 단체는 각 희생자들에 대하여 \$ 20,000,000씩을 지급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납치되어 강간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간 1회당 \$ 500씩 계산하여 그 같은 액수를 산출하고 있다.

셋째, 정대협의 입장이다. 정대협은 개인별 금액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4조엔을 요구한 바 있다.<sup>2)</sup> 정대협에서도 이 금액의 정확한 산출근거나 배상액의 지급방식, 그 사용 용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는 없다.

넷째, 일본내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이다. 이귀분, 심미자, 문옥주 할머니 등의 경우 소송대인을 통하여 청구된 금액은 각 금 2천만엔이다. 이 청구금액의 산정 역시 엄밀한 계산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가 보다는 상징적인 액수로 보아 청구된 것이다.<sup>3)</sup>

1. Asian American Association for Reparation for Sexually Abused Women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Inc. 라는 단체에서 작성 배포한 팜플렛 참조

2. 1994. 5. 6자 정대협 기획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3. 高木健一 등의 변호사가 제기한 李貴粉 외 5인의 소장

## 3. 합리적 배상액의 산정

### 가. 배상액 산정의 유례(類例)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인 전상자들과 그 유족에게 지급한 연금의 액수를 참고할 수 있다. 몇년간만 그 액수를 뽑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4)</sup> 물론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연금에 불과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서의 군위안부 희생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년도	사망자 유족연금	4급 상이자 연금
1952	10,000엔	36,000엔
1953	25,200엔	48,000엔
1954	27,600엔	48,000엔
.....	.....	.....
1969	119,000엔	199,000엔
1970	135,000엔	214,000엔
1971	160,000엔	274,000엔
.....	.....	.....
1990	1,645,400엔	2,630,000엔
1991	1,706,700엔	2,728,000엔
1992	1,772,400엔	2,833,000엔

한편 오키나와 전투에서 20만명 이상이 죽었고, 그 가운데 약 반수가량(9만 4천명으로 추산)이 오키나와 섬의 주민들이었다고 파악된다. 이들 희생자들의

4. 이 자료는 Japan Civil Liberties Union, Report on War Responsibility of Japan for Reparation and Compensation, April 1993에서 인용한 것임

유족들에게도 일본의 '은급법' (恩給法)에 의하여 연금이 지급되어 왔다. 참고로 1986년 현재 그 연금액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 유족은급금 :

1. 우선권이 있는 수급권자가 한 사람일 때 - 매년 1,511,000엔
2. 우선권이 있는 수급권자가 n명일 때 - 매년  $1,511,000 + (n-1)5,400$ 엔
3. 수급권자가 우선권이 없을 때 ----- 매년 5,400엔

\* 조위금(일시 지급금) ----- 50,000엔

일반적으로 일본 법정에서의 정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도 배상액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소화 1년에서 5년 까지 5개년간의 정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이다<sup>6)</sup>.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00엔	1	700엔	2
200엔	1	1,000엔	1
250엔	1	1,500엔	1
300엔	1	2,000엔	1
400엔	1	평균	계
500엔	7	577.5엔	20

여기서 화폐가치의 변동율을 곱하면 현재의 정조권 침해 위자료 액수를 산출 할 수 있다. 위의 각 사건의 경우 각각 사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다음 케이스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법정의 태도를 알 수 있다.<sup>7)</sup>

인용액	원인	청구자측의 사정	피청구자의 사정	선고일시
50만엔	여관에 끌고가 강간	당시 중3(14세)	대출대민인 월수 3만엔	소화29년

한편 일반적인 사망사건에 있어서 교통사고 등 생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본의 사법부는 사망자가 가장인 경우 1천만 내지 1천 6백만엔, 독신의 남녀 또는 주부이면 9백만 내지 1천 3백만엔, 유아나 노인이면 900만엔 내지 1천 2백만엔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한다.<sup>8)</sup>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일 뿐 나머지 다른 재산권 침해나 일실수익 등은 별도의 문제이다.

#### 나. 배상액 산정의 범위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강간으로 인한 배상에 그칠 수 없다.

1953년의 독일의 연방보상법(The Federal Indemnification Law of 1953)은 생명의 상실, 육체와 건강에 대한 손실, 치료비용, 임금의 감소, 자유의 상실, 체포, 재산적 손실, 차별적 과세, 경제적 또는 직업적 승진기회의 박탈 등 온갖 종류의 실질적 손해를 모두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다.<sup>9)</sup>

이렇게 본다면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경우에도 체포, 감금, 강간의 일련의 연속적 범죄로 인한 자신의 피해, 그 가족들의 고통, 자유의 상실, 육체적 그리고 건강상의 부상과 그 손해, 일본군 부대와 그 장병들을 위해 행한 노력에 대한 보수,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고통으로부터의 위자료 등이 모두 배상의 범주에 포함되고 배상액수의 산정기준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5. Sayoko Kodera, "Compensation to Civilian War Victims on Okinawa",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No.31, 1988, p.76

6. 大野文雄, 失野正則,

7. 위 같은 책, p. 214

8. 김명수, 생명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83

9. Nicholas Balabkins, West German Reparations to Israel,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71, p.153

#### 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특성에 따른 정당한 배상액

유례라고 든 사례들은 대체로 간통, 강간, 강제외설, 혼인빙자 등의 경우이므로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경우와는 사실상 차원을 달리한다. 정조를 침해한 데 따르는 일본국내의 손해배상 케이스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1회의 강간만으로도 가해자의 월급의 16개월치를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4급 정도의 상이군 인들의 경우 매년 3백만엔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4급 상이군경의 대우만 받더라도 1억 5천만엔(3백만엔/50년)은 된다.<sup>10)</sup>

일본군 '위안부'들의 경우 납치, 감금상태의 지속, 강간의 횟수, 그 이후의 육체적 정신적 파괴, 결혼의 불가능과 자식 출산의 불능 등 인생의 파멸 등 그 고통과 피해의 정도를 일반 정조침해의 경우나 일반적인 부상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순히 강간의 횟수나 억류 기간동안을 고려하여 배상액수를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볼 것이다. 개인적 사정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들의 경우 아무리 경미하고 짧은 기간의 '위안부' 생활이었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청춘과 그 이후의 삶의 황폐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나머지 여생이라도 편안하고 존엄한(decent)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상액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이들이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정된 주거의 확보, 일상생활비 보장, 치료비, 문화비의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주거비의 경우 서울 소재 30평의 아파트가 최소 전세금이 1억은 되고,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치료비와 문화비로 30만원, 기타 사망시의 장례비 등을 감안하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달 200여 만원은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의 잔여 여생의 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본다

10. 전쟁이 끝난 1945년부터 내년이 50년이 지나게 되고 중간이자는 제외하고 단순계산 한 것이다. 물가의 변동이나 연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1992년의 연금액만 가지고 역산(逆算)한 것이다.

면 2억 4천만원(200만원/12/10)이 이들의 인간다운 여생을 지낼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금전적 도움은 실로 절박한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매달 보조하고 있는 15만원의 생계지원비만으로는 최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을 그들을 생존기간 동안 주기로 했지만 실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희생자들은 '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일본정부와 직접 담판을 벌여 배상을 받겠다는 등의 조급증을 보이기도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단시간내에 그러한 완강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없다. 국제중재 재판소로 일본정부를 이끌어 내는 일도 국제적 압력과 기준으로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과 원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일 것이다. 이 작은 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었으면 다행이겠다.

11. 이 단체는 1994. 5. 3자 성명에서 기존의 캠페인단체들을 향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모금을 착취" 한다는 비난과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노력도 아무런 결실없이 수포로 돌아갔다.

# 일본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

오자키 준리

## 1.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그 후의 정권

1993년 7월 18일에 시행된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자민당의 장기단독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자민당 단독정권의 붕괴후 자민당과 공산당을 빼 사회당, 공명당,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사끼가케당, 사민련에 의한 호소카와 일본신당 당수를 수반으로 한 연립다수정권이 탄생했지만 1994년 4월 사회당, 사끼가케가 정권을 이탈 하네다 신생당 당수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소수정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정권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6월에는 무라야마 사회당 당수를 수반으로 하는 자민, 사회, 사끼가케에 의한 연립다수 정권이 현재 일본정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민당의 붕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민당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호소카와 정권의 경우에서도 자민당에서 나온 사람들의 참가라든가 지금 현재 사회당 연립정권에 있어서도 자민당에서 사끼가케로 나온 자민당을 이탈한 사람들이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 정확히 내각이 붕괴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에 따른 소선거구 구분할법 등이 성립되어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명당,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등은 [신진당]이라는 신당을 12월중에 결성할 예정이고, 사회당의 일부는 사끼가케, 민사당 등과 제 3의 세력으로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신제도에 기초한 중의원 선거는 내년 이후 언제 실시되어도 이상없을 정세이고, 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새로운 선거제도 때문에 선거구의 세력분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고, 여전히 일본정치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가 미약해지면 관료가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관료가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서 전후배상의 문제라든가 전후처리문제들이 변화없이 과거와 똑같은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 2. 여당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

무라야마 정권의 연립여당은 6월 29일, 아래와 같은 [새로운 연립정권에 관한 합의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전후 50년과 국제평화 = 신정권은 전후 50년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를 위한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결의의 채택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후 50년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관을 국회 및 정부에 설치한다. 전후 50년을 기념하여 평화를 위한 국제공헌에 도움이 되는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여당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 팀을 발족하였고, 8월 31일에 행해진 이하의 총리대신 담화에 기초하여 그 팀중에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마음 속으로 부터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관계제국(諸國) 등과의 상호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이러한 심정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또 이상의 정부의 계획과 아울러 이 심정을 국민 여러분에게도 나눠갖게 하기 위해서 폭넓은 국민참여의 길을 함께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소위원회의 목적은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11월 말을 목표로 성안(成案)을 얻어서 프로젝트에 보고하는” 일 이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사회당 2명, 사끼가케 1명, 자민당 3명으로 6명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이 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가라시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

는 관 주도형으로 민간기금구상을 성안화 하려고 했었는데,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 뿌리깊은 반대 등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 보다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법적 책임에 기초한 배상은 현재는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앞으로의 전망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소위원회의 정리작업에 즈음하여 지금 다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책임인정에 관한 여부입니다. 이 점을 애매하게 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ICJ에 의한 최종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로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의 입법화를 당장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재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첫번째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정부는 즉시 두번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중재에 합의하게끔 하기 위하여도 피해자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국제적 여론의 고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 개인적으로 친한 여당의원과 PCA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가장 걸리는 문제는 PCA에 가려 가는 것이 일본의 자주적인 판단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에서 받아들여서 일본정부가 판단을 내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의원은 그 경우 방해가 되는 것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1) 국제법상의 문제 2) 외교법상의 문제 3)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선 국제법상의 문제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65년 한일협정으로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상의 문제로는 예를 들어서 한국정부가 그런 문제를 다시 문제로 삼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정책상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전쟁피해자에 대한 다른 정책과의 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25일에 만들어진 사회당의 종군위안부문제 해결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의 배상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정부견해를 무라야마 내각이 번복하는 것은 외교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문제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국가 배상의무의 관점이 아니라 일본에 의한 자발적인 보상으로서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 어떤 행태로든 개인에게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일본정부에게 책임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ICJ의 권고에 나와 있는대로 아주 명확하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상의 문제로 보면, 한국정부가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미해결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일본외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평계를 봉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국정부가 일본국가와의 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국정부측이 돈을 내는 것보다 일본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추궁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일본정부의 결단을 이루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적 권위가 있는 PCA에 이 문제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일본정부에 있어서도 매우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PCA에 이것을 갖고 가는데 합의할 것인가 하는 전망과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할머니들과 지원자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정부가 하려고 하는 위로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본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두 갈림길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대세가 위로금을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가 종결되어버릴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를 직접 입은 할머니들께도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

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일본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명예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PCA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후 50년 프로젝트는 내년 8월을 목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 8월이 하나의 최종적 기한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 논 평

### 사회자의 요청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배상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1. 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즉, 국가간의 청구권 및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끝났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인지,
2. PCA제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새로운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 논평 1 >>>

김 원 용 의원(국회정신대대책모임 의원)

인사드립니다. 국회 민주당 소속 김원용입니다. 저희 한국국회 내에는 금년초에 5명의 의원이 모여서 국회정신대대책모임을 결성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5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5명 의원과 상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섯명의 의원들이 여기 모인 여러분께, 특히 일본에서 오신 변호사님들과 민간단체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해달라고 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회 정신대대책모임이 결성된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정부에게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의 조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고, 한국정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이행의 조처를 취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개해온 활동과 주장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토론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희에게 사회자 박찬운 변호사가 한 질문은 저희 국회의원들이 우리정부에 하는 질문과 똑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외무부에서 오신 분이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정신대책모임은 오늘과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화가들이 30여점의 그림을 그려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30일 오후 6시에는 많은 분을 초청하여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선친이 일제시대에 임시정부 광복군 간부로 일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생존한 2명의 여성 광복군 중의 한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일 문제를 중요의 시각으로 보고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일간은 멀어질 수 없는 숙명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당면한 전후처리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양심적인 일본의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하여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며 일본정부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나선다는 것은 일본의 희망이고, 아시아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사람들도, 한국국회 정신대책모임 국회의원들도 맹목적인 애국심만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한 자세로 서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철저한 전후청산, 그리고 책임있는 위안부 문제해결, 이런 것이 결국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본정부와 많은 일본국민들은 소아적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전후청산의 문제가 한국 국민과 일본국민의 정서를 들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21세기 한·일 평화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은 전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체결 3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강점때문에 생긴 조선인 의병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때 우리 한국으로는 내년이 민족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일본의 명예도 회복되며 마침내는 인류의 존엄이 존중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한국국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 논평 2 >>>

신각수 외무부 동북아1과장(한국정부 정신대실무대책반)

안녕하십니까? 외무부 동북아1과장 신각수입니다.

동북아1과는 외무부내에서 일본을 담당합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정대협으로부터 듣고, 제게 참석을 부탁했을때 제가 할 역할이 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의견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사회자에게 요청받은 내용은 전혀 부탁을 받은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개인의 입장까지 조금 덧붙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1992년 1월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한일간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상당히 혐악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지난해 8월에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사발표를 하고, 그와 함께 사죄와 반성의 뜻에 가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외교적인 현안으로서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3가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에 관계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한국정부와 피해자 및 국내관련단체와의 관계이고, 세번째는 일본정부와 국내 피해자 및 국내관련 단체관계입니다.

첫번째, 한·일정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1) 1965년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하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 그렇지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인 규명, 그 규명에 근거한 일본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정부는 1965년 협정에 따른 국내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처를 1975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자일 경우에는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조처를 실시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1965년 협정에 따라서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일본관방장관 담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사죄와 반성에 가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그 조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일본정부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명분과 격을 갖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해결해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정부와 국내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액 면에서 볼때 충분하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 할 때는 이보다 좀 많은 금액이었습니다만은 국내 독립유공자들과의 형평문제가 거론이 되어 그 정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향상된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와 국내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정대협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자께서도 제기하셨지만은 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한 제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관련자료와 사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즉, 아태지역을 담당하는 국입니다. 이 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한 부탁문제는 저희 외무부의 조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설중재재판소에 이 문제가 부탁이 되려면 제일 어려운 난관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재부탁 합의, COMPROMIS를 일본정부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외무성의 제 3자적인 개입 해결에 관한 입장의 추세를 보면 과연 일본정부가 PCA에 부탁하는데 합의할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일본정부가 그런 캠프로미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력이 심하게 가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일본정부가 다른 과거사 문제도 당면해 있기 때문에 과연 중재부탁에 합의할지 제 개인생각으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PCA에 부탁된 것으로 당사자에 합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효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발생한지 약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효문제를 여하의 법리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PCA에 부탁하는 중요한 법리인 책임자 불처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5년 협정에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기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제판례의 경우에는 이 불법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경우에는 행위자, 즉 일본군‘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이러한 면에 관해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 그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고, 정부차원에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

[1]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로 조직된 정대협 PCA한일 변호인단(1994.11.28. 현재 한국 37명, 일본 68명)은 1994. 11. 28. 서울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2.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일본정부가 "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陸戰법류관례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였고,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일본군 '위안부' 개인배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65년 한일협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간 조약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설사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교보호권만이며 일본군 '위안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별도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오므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되게 한데 따른 '불처벌'의 배상책임을 진다.

5.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일본정부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CA를 통한 중재제소는 일본군 '위안부' 개인이 직접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해결방법임을 확인한다.

6. PCA에 의한 해결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금액은 ICJ권고대로 1인당 4만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

7.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한 피해배상액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요된 생활을 할 당시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해 오므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손해를 모두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2]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우리는 일본과 한국정부 및 국제연합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1)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1993. 8. 24. 2차 보고서를 발표후 계속적인 진상조사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더이상 진상조사발표도 하지 않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총 숫자,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등의 명령체계 등 전모에 관한 진상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이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현재의 민간위로금안의 추진을 중지하